

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6월 3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6월25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치수과장 이 종 업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개정(2005.1.27)되어 기존의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,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를 규정 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없음.

3. 검토보고

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전부개정(2005.1.27)되어 수방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고,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어, 우리구에서는 2009년 7월 30일자 조례 제756호로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「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」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